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 입주자모집공고

학이 품은 천년의 터– RicheVille 리슈빌 학의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 – 7542호(2009. 03. 1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학하지구 138-1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9층 ~ 25층 10개동 총 704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 천원)

구 분	아파트코드(일 반)	주택관리번호(모 델 번 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 계	기 타 공 용(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세 대 당 대지지분	공 급 세대수	층별구분
민영주택	22132-01	2009000125 (01)	115.2425	84.9995	30.2430	115.2425	48.5010	163.7435	52.2759	121	
	22132-02	2009000125 (02)	112.8341	84.9977	27.8364	112.8341	48.5000	161.3341	52.2748	196	
	22132-03	2009000125 (03)	132.1824	100.6104	31.5720	132.1824	57.4087	189.5911	61.8768	194	
	22132-04	2009000125 (04)	158.6631	128.5410	30.1221	158.6631	73.3460	232.0091	79.0545	193	

주택형 (㎡)	층 별	세대수	세대당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합 계	계약금: 계약시(5%)	중도금 1차(10%) '09. 5. 20	2차(10%) '09. 9. 20	3차(10%) '10. 2. 20	4차(10%) '10. 6. 20	5차(10%) '10. 11. 20	6차(10%) '11. 3. 20	잔금(35%) (입주지정일)
115.2425	기준층	115	112,400	186,600	299,000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9,000	105,000
	최상층	6	112,400	195,600	308,000	15,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29,000	109,000
112.8341	1~2층	16	112,400	174,600	287,000	14,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7,000	101,000
	기준층	172	112,400	183,600	296,000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7,000	104,000
	최상층	8	112,400	192,600	305,000	15,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28,000	107,000
132.1824	1~2층	16	133,000	215,000	348,000	17,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3,000	123,000
	기준층	170	133,000	226,000	359,000	18,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5,000	126,000
	최상층	8	133,000	237,000	370,000	19,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129,000
158.6631	1~2층	16	170,000	263,000	433,000	22,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153,000
	기준층	169	170,000	276,000	446,000	22,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2,000	157,000
	최상층	8	170,000	289,000	459,000	23,000	46,000	46,000	46,000	46,000	46,000	45,000	161,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초과주택의 경우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발코니 확장비용(선택품목)은 상기 공급금액에 미포함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주택형별로 비용 및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 카탈로그 참조)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음(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기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평형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및 유치원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등기법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거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일괄신청 시에 해당 품목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품 목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일괄 선택	문	각방출입문	각방 문틀 및 문짝	현관문
	바닥		바닥마감재(온돌마루, 타일, 복합대리석 등)	
	벽	각방, 거실, 주방	벽지, 거실아트월, 타일, 걸레받이 등	벽석고보드(해당부위), 도배 바탕면 처리
	천장	각방, 거실, 주방	천장지, 반자돌림, 우물천장	천장틀위 석고보드
	욕실	공용, 부부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샤워부스,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욕실장 및 수건장식장, 천장환기휀, 비데 등	액체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주방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식장, 악세서리, 벽타일, 렌지후드, 가스오븐렌지, 정수기, 주방TV폰, 절수패달 등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 , 원)

주택형별	115.2425(34A형)	112.8341(34B형)	132.1824(39형)	158.6631(47형)
마이너스 옵션 금액	20,796,000	20,411,000	24,764,000	28,749,000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으며, 기 선택한 계약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 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미포함되어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발코니확장공사비

(단위 : ㎡ , 원)

주택형별	115.2425(34A형)	112.8341(34B형)	132.1824(39형)	158.6631(47형)
금 액	7,920,000	9,350,000	12,100,000	14,300,000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 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05. 12. 2 개정 · 시행)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에 발코니확장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지역난방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동급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03. 13)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이어야 함 – 입주자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배 점 기 준 기 준	점 수	비 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적용함

● 3자녀 이상 특별공급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는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1통(본인이 인정받고자하는 대전광역시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1통(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가족관계증명서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제3자대리인 신청시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신청시 구비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의 인감도장

※ 상기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오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로 별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국토해양부 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3자녀이상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

주택형별	115.2425(34A형)	112.8341(34B형)	132.1824(39형)	158.6631(47형)
공급세대수	3	5	5	5

● 특별공급(기타)

- 85㎡이하 대상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군 관련종사자 등으로서 해당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등)에서 추천 또는 인증을 받은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단,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특별공급신청시 구비서류

특별공급 (기타)	본인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자격 증명서(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미지참시 청약접수가 불가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각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 특별공급대상자 중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별공급(기타) 공급세대수

(단위 : ㎡)

주택형별	115.2425(34A형)	112.8341(34B형)
공급세대수	12	19

※ 85㎡이하 대상주택의 세대수의 10%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함

3)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03. 13)현재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재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3순위 청약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자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 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단,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은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하여야 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으로 변경차액을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단위 : ㎡)

주택형별	115.2425(34A형)	112.8341(34B형)	132.1824(39형)	158.6631(47형)
대전광역시	250만원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 청약가점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에 의거)

구 분		민영주택	
85㎡이하 주택	저축종류	청약예 · 부금	
	청약방법	가점제	추첨제
	공급세대비율	75%	25%
85㎡초과 주택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가점제	추첨제
	공급세대비율	50%	50%
공통사항		• 각 주택형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 2순위를 취득한 자 • 가점제 신청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 점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감점 산정기준

구분	감 점 항 목: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4)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특별공급(3자녀이상)		▶특별공급신청자격을 갖춘자에게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대전광역시	2009. 03 .17	당사견본주택 10 : 00 ~ 16 : 00	당사견본주택 2009. 03. 17 (16 : 00)
	특별공급(기타)		▶다음조건을 구비한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세대수의 10%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단체 기관장의 추천 또는 인증을 받은자				
	1순위	공통	• 가점제대상자 :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분 • 추첨제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2009. 03. 18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30 ~ 18:00	• 일시 : 2009. 03. 26(목) • 장소 : 견본주택 • 신문공고 : 중도일보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바람)
			• 전용면적 85㎡ ~ 102㎡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분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 ~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 이전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 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초과주택에 한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 '1순위청약제한대상' 참조)				
	2순위	공통	• 가점제대상자 : 2순위 청약자 전원 • 추첨제대상자 : 해당사항없음(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2009. 03. 19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2009. 03. 20	• 접수장소 – 농협중앙회 본 · 지점 • 접수시간 : 09:30~16:30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3순위자,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은행창구 청약가능시간 : 09:30~ 16:30)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과거 다른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로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전원의 당첨사실 포함]은 재당첨 제한 기한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과거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 (www.apt2you.com)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선택 → 과거 5년간 당첨사실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소유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 주택 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및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방법

- 특별공급(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에 한함)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 공급대상 주택수의 3% 범위 내에서 공급하며, 특별공급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미달 시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층별 · 동별 · 호수 구분 없이 주택형별, 단지별, 청약순위별, 공급방법별로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하지 않은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 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 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3순위자, 노약자 · 장애우 등 청약시 구비사항 (일반공급 청약대상자 창구접수시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배우자포함) 신청시	– 민영주택 공급신청서(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3순위 : 농협중앙회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제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입증 서류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3순위 청약신청금 및 청약방법

1. 농협중앙회 본,지점 창구접수 : 구비서류 및 청약신청금 100만원을 준비하여 농협중앙회 본, 지점 방문 → 공급신청서 작성
2. 국민은행 창구접수자 (노약자, 장애우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에 한함)

장 소	청약 신청금	신 청 금 납 부 방 법
농협중앙회 본/지점	100만원	가능한 대전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신청자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9. 03. 26) 이후 평일 09 : 30 ~ 16 : 30(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은행 본 · 지점 (단, 인터넷 청약자 및 본인의 지정계좌로 이체신청한 분은 당첨자발표 익 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제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농협중앙회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에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3자녀이상, 기타)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1,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 1순위 가점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형별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해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분
이용대상	공통	• 1 · 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단,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요건)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 가입하신 분)
인 터 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 청약 → 당첨확인
	이용기간	2009. 03. 18 ~ 2009. 03. 20 (3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른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 ☎ 1588-9999 [서비스코드 701]	☎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09. 03. 26 (08시 30분)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09. 03. 31 ~ 2009. 04. 02 (3일간, 시간 : 09 : 30 ~ 16 : 3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아래 주소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직접납부(대전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계약체결 이후라도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순위 등이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기체결한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은 별도이자 없이 환불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국민은행	계룡건설산업(주)	745401 – 01 – 349866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장소에서 반드시 직원 또는 은행 직원에게 납부하셔야 함
– 중도금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및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시 구비 사항

구 분	계 약 시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생략) • 계약금 : 대전광역시 소재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 : 아파트계약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1통(주소이전, 세대주 성명 및 관계의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세대주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거주기간 및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통)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제한 등 당첨사실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청약관련 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가점제 당첨자 중 유주택자이거나 추첨제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 ·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입주예정일 : 2011년 8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실외배드민턴장 2코트, 실내배드민턴장 2코트, 실내휘트니스센터), 문고, 보육시설, 경비실(3개소) 등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 대출 금융기관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소유자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당첨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와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전용면적 85㎡이하) 또는 3년(전용면적 85㎡초과)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당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이전될 수 있어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동일한 청약저축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첨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이 불가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의 표기, 외부색채와 그래픽 등의 계획은 향후 인,허가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 시 내용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법규 등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대전광역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제 2008-5호)조건에 의하여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상의 기부채납 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행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도시계획도로와 사업부지내로 설치하는 완화차로 및 보도는 준공시 기부채납 또는 토지의 점유, 사용권등을 관련부서와 협의에 의해 처리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 하여야 함 • 정보통신등급(특등급,홈네트워크AA등급), 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 주택성능등급(95점), 에너지 효율등급(2등급) 등은 건물 완공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 무인택배 시스템은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되며, 2년 경과 후에는 별도의 유지비가 입주민의 비용으로 운영됨 • 본 아파트는 영구배수시스템 적용단지로서 별도의 유지비가 입주민의 비용으로 운영됨
- 105동과 110동의 경우 2개층 피로티가 계획되어 보행통로로 이용될 수 있어, 피로티 주변세대는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지역 정압기를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하여 단지내 일정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는 인테리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내 놀이기구 및 체력단련기구의 형태, 위치 및 개수는 카탈로그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모형도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 시 별도 상담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함
- 본 공동주택 사업은 대전시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내의 사업으로 사업대지의 면적은 도시개발사업 완료후 최종 확정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서 발생되는 제반 비용 및 수입금(정산금등)은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의 부담의 수입 및 비용으로 분양자와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및 각종 아파트 홍보시설물의 유지, 보수로 발생되는 전기료, 시설보수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 · 층별 · 호수별로 일조권 · 조망권 · 생활권 ·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설치로 인하여 세대조망이 차폐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소음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설치되는 천창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등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된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카다로그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모형 및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의 단지 내외부 도로차선과 보행로 등은 교통영향평가 등의 준수를 위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부지 서북측(학산) 및 남쪽 녹지일부에 분묘가 있으며, 이로인해 일부동의 전면 및 배면으로 분묘가 조망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학하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의 침해나 도로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와는 무관함
-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대출신청자 본인 부담이며,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는 중도금 납부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방가구의 하부(바닥)에는 온돌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본 아파트 마감재 및 선택형 가변형 벽체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선택형에 따른 일체의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하지구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당해지구 명칭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학하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학하지구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한 초, 중, 고등학교설립은 대전시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학하지구 내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원도심의 먼 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를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동서관통도로는 2010년 개통예정이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의 사전방문 방법
- 입주개시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상태확인 항목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리회사	감리금액(VAT별도, 단위 : 원)	비 고
건 축	(주)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1,426,000,000	
전 기	(주)하림기술단	438,000,000	
소 방, 통 신	덕원기술단	157,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단위 : 원)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161,931,000,000	제 06712009-101-0000100호

▣ 분양보증내용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대상 제외사항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차명,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 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입주금
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4호 단서조항의 임시사용승인에 의한 입주일에 납부할 수 있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택사양 품목(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는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로 문의 바랍니다 (02 – 3771 – 6300)

▣ 견본주택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45번지 ☎ 042-471-5400

▣ 홈 페 이 지 : www.krcon.co.kr 내에 있습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민영주택 7개 항목 가격고시 의무 면제 사항임

총 704세대 115㎡/112㎡/132㎡/158㎡

115㎡는 과거 34A평형, 112㎡는 과거 34B평형, 132㎡는 과거 39평형, 158㎡는 과거의 47평형에 해당함

문의 : 042)471-5400